



제429회국회(정기회)
제 9 차 교 육 위 원 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산업교육기관 실험·실습운영비에 대한 전액 지원〉
■ 서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039호)

2025. 11.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지영 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5. 9. 17.
3. 회부연월일 : 2025. 9.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의 실험·실습시설 운영 비용과 실험·실습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산업교육기관의 실험·실습시설 운영비 등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나머지 부분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경비 지원이 상이하므로 산업교육기관은 실험·실습시설 운영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경비 분담 중 ‘예산의 범위에서’를 삭제하고, 대학을 제외한 산업교육기관의 실험·실습시설 운영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지원하며, 그럼에도 운영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고등학교인 산업교육기관의 산업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

Ⅲ.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산업교육기관의 실험·실습시설 운영비 지원 규정에서 ‘예산의 범위에서’를 삭제하고, 운영비 부족분에 대하여 교육감이 지원하도록 하며, 교육감의 지원에도 운영비가 부족한 경우 부족분 전액을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여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실험·실습시설 운영비의 부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실습시설 운영비용과 실험·실습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제19조(실험·실습시설 운영비의 부담 등) ① ----- ----- ----- ----- 경비(이하 “실험·실습시설 운영비”라 한다)를-----.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실습시설 운영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지원한다.
<신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감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산업교육기

② · ③ (생략)	관의 실험·실습시설 운영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부분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④ · 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	--

나. 현행법상 산업교육기관의 실험·실습시설 운영비 지원 규정과 사업 개요

□ 현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실습 운영 비용과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¹⁾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경비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 ‘산업교육기관’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산업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고

-
- 1) 제16조(국고보조의 기준) 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설비 등의 보조금은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등에 드는 경비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실험·실습시설의 운영과 실험·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금은 그 경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산업교원의 현직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금은 현직 교육을 받는 교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교육비 전액

등기술학교 및 대학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현재 국가의 지원방식을 보면, ①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에 해당하는 직업계고 및 마이스터고의 실험·실습비용은 보통교부금 또는 특별교부금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고,

②대학의 경우, 대학혁신지원(2301-300) 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2704-300)을 통해 지원되는 재정지원을 활용하여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실험·실습시설 운영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 중 대학을 제외한 직업계고 및 마이스터고의 실험·실습운영비 지원을 위한 교부금 지원은

①보통교부금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이 측정이 되면, 이에 기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교부금 규모가 산정됨. 이때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직업계고 및 마이스터고에 대한 지원분을 고려하여 교부금 규모가 정해지고 있으며,

②특별교부금의 경우,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 사업과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목적성을 가지고 교부하는 금액으로 직업계고 실험·실습시설 설치 및 운영비와 관련된 국가시책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음.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① 특성화고등학교 전환 고등학교 등(직업계고 재구조화)

학교 유형	규모	단위비용
1)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려는 고등학교	가) 12학급 이상 18학급 미만	학교당 3,000,000천원
	나) 18학급 이상 30학급 미만	학교당 5,250,000천원
	다) 30학급 이상	학교당 7,500,000천원
2) 직업교육 학급을 증설하려는 고등학교	가) 1학급 이상 3학급 미만 증설	증설학급 수 × 225,000천원
	나) 3학급 이상 7학급 미만 증설	450,000천원 + [(증설학급 수-2) × 150,000천원]
	다) 7학급 이상 증설	1,200,000천원
3) 직업교육 학과를 개편하려는 고등학교	가) 1학급 이상 3학급 미만 개편	개편학급 수 × 375,000천원
	나) 3학급 이상 7학급 미만 개편	750,000천원 + [(개편학급 수-2) × 225,000천원]
	다) 7학급 이상 10학급 미만 개편	1,650,000천원 + [(개편학급 수-6) × 150,000천원]
	라) 10학급 이상 개편	2,250,000천원

②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운영비)

학급수	18학급 미만	18학급 이상 27학급 미만	27학급 이상
단위비용	558,000천원	620,000천원	682,000천원

자료: 교육부

<2025년 기준 직업계고 특별교부금 관련 사업 현황>

-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 신규 지정 마이스터고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실습실 개선 비용 등 지원(3교 지정, 선정 후 2년간 교당 50억원)
- **마이스터고 재도약 지원 사업:** 기지정 마이스터고의 산업 동향 변화에 따른 신산업신기술 분야 중심의 재도약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첨단 실습 기자재 확보 및 노후시설 개선 비용 등 지원(3교 지정, 선정 후 교당 5억원)
-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운영:** 지역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실습환경 등 교육환경 개선 및 구축 등 활용 가능한 협약형 특성화고 준비금 지원(10교 지정, 선정 후 5년간 45억원)
- **도제학교 운영:** 기업 인력수요에 대응한 직업계고 학생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방과후 수업 운영, 기자재 수리 및 관리비, 홍보비, 실습비 등의 운영비 지원(166교, 26억원)
- **특성화고 미래역량 강화사업:**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연수비, 사업관리비, 환경구축비 등의 학교 사업비 지원(100교, 선정 후 교당 1억)
- **실험·실습생 및 교사 건강관리:**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실험·실습에 참여하는 직업계고 학생 및 교사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실시 비용,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취급 실험·실습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비용 지원(24년 기준, 131억원)

자료: 교육부

다. 검토의견

- 대학을 제외한 산업교육기관은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에 교부되는 교부금을 통하여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교부받은 지원금을 전액 배분하지 않거나, 전액을 배분하더라도 배분액 규모 자체가 충분하지 않아 실제 학교의 실험·실습환경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실제 직업계고 및 마이스터고에 배분되는 지원금 규모에 대해 시·도 교육청 차원의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각 학교는 노후된 실습기자재의 교체, 안전관리 의무 이행 등 필요한 비용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음.

- 현재 전국 직업계고 및 마이스터고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전국 특성화고 477개교, 마이스터고 51개교, 일반고 직업반 49개교 총 577개교로 총 고등학교 수 2,380개교 중 약 2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이처럼 직업계고는 청년층의 진로설정에 있어 대학 진학이라는 단일 진로 체제를 벗어나 고졸-취업-경력이라는 새로운 경로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있으나, 실험·실습시설 운영 비용 등의 재정 문제는 직업 훈련 등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학생들의 경력형성 기회를 확보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산업교육기관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족

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교육기관의 실험·실습교육의 안정성과 질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그 의의가 있다고 보여짐.

□ 다만, 개정안을 입법화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첫째, “예산의 범위에서” 문구를 삭제하는 경우의 경직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통상 ‘반드시 예산을 책정·계상하여 이를 지급할 의무까지 부담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²⁾고 해석²⁾되어 재정적 지원에 대한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를 삭제하는 경우 재정지원이 의무지출로 전환되게 되는 것임.

따라서 기준재정수요를 반영하여 보통교부금을 배분하고 있는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배분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교육부는 일부 교육청에서 학교 교부 시 100% 미만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학교 실험·실습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과 협의 후 충분한 학교별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보통교부금 교부 실적이 저조한 경우, 마이스터고 신규지정 심의 시 감점 등 특별교부금 지원 여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

2) 대법원 94다16052, 법제처 2020. 1. 14. 회신 20-0002 의견제시 사례

라는 설명임.

- 둘째, 법률체계 면에서 지원 주체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현행법에서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실습 운영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³⁾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이 됨.

따라서, 개정안 제19조제2항에 따라 운영비 부족분에 대하여 교육감이 지원하도록 하는 경우 현행법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 용어가 혼용이 되고 해석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아울러, 개정안은 직업계고 중심의 지원 확대 취지인 것으로 이해되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행법상의 산업교육기관에는 대학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대학의 경우 현재는 대학혁신지원사업등을 통해 교육부가 예산을 주로 지원하는 구조인데, 교육감의 지원을 규정하는 경우의 정합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교육부는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질 높은 실험·실습 교육을 제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공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험·실습비용 전부를 일률적으로 의무지출로 전환하는 것은 각 기관이 기관 여건과 교육 수요 등을 종합하여 유연하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재의 일반재정지원 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193